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19가단2368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송종선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2,84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84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5. 12. 17.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206,473,724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없이 차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92,489,2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2,84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회사는 E공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E공사에 원고의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업체이다.

피고 회사는 농산물 수입업을 하던 피고 D과 2016. 12. 31.까지 원고의 관리부장이었던 피고 C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 2015. 12. 14. 설립등기를 마치고 필리핀 망고수입 사업을 한 회사로, 피고 C의 처 사내이사 G과 대표이사 D이 임원인데, 해외 현지 수입 관련 업무는 피고 D이, 자금관리 업무는 피고 C가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9. 피고 D의 처인 H의 계좌로 30,861,035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 계좌로 2015. 12. 17. 38,982,360원, 2015. 12. 21. 30,211,329원, 2016. 4. 20. 40,623,600원, 2016. 4. 29. 60,935,4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하여 F에게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이를 공급하였으며, F는 원고 회사 계좌로 2016. 4. 18. 100,000,000원, 2016. 5. 31. 1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F는 2015. 11. 23. I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영업보증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원고와 F 사이의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F에게 합계 207,849,200원 상당의 수입망고를 공급하였는데 F가 1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489,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F와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964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F에게 망고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법원은 2018. 9. 1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865),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35900).

(4). 원고 회사는,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2).항과 같이 송금한 금원은 농수산물 출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피고 회사에게 자금유통을 하기 위하여 출하행위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서 하는 ‘허위상장’행위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 정한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 C와 피고 D이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피고 C와 피고 D을 농안법위반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5).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4. 12.경 ‘이 사건은 출하자(피고 D)와 도매시장법인(원고), 매매참가인(F)이 약정하에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그 담보액 내에서 출하자에게 망고 구입 명목으로 출하대금을 선지급하며, 출하자는 그 출하대금을 통해 망고를 구입하여 전자거래방식으로 매매참가인에게 직접 공급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것으로 농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F의 1억 원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전에 다른 법인을 통해 망고 수입으로 수익을 올린 사례를 기초로 재차 이 사건 기안을 하여 F가 일부 대금을 지체하는 때에도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므로, 피고 C, D에게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6). 원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80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9.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 10호증, 갑 제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농안법 제3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를 하여야 하고 실물 출하나 배송 없이 자금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위탁 내지 허위상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주주, 채권자들을 해하는 '허위상장에 의한 자금유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그 자금으로 필리핀 망고를 만들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출하행위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206,473,724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 D는 회사 운영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필리핀 망고의 출하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실물거래 없음에도 위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 회사에게 92,84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2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회사에게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D이 피고 C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F에게 실제로 망고를 공급한 점, F가 원고 회사에게 망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가 1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출하행위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상장행위를 한 것이거나, 피고 C나 피고 D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가 망고의 공급 일시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회사가 출하대금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물건이 실제로 상장되어 거래된 것이라면 허위상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